

제 849 호

1981. 7.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 집 : 문화공보관 김 진 호

전화 725-7834

인 책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525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3
◎ 훈 령		
제 549 호 :	서울특별시법규정비심의회규정	3
◎ 예 규		
제 412 호 :	서울특별시경찰관파출소등급에관한규정	6
◎ 고 시		
제 27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4
제 277 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4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94 호 :	등청사위치변경 공고	15
제 195 호 :	건설업법 (조정식재및시설물단종공사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한취소공고	15
제 198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6
제 199 호 :	열사남기자재형식승인취소	16
제 405 호 (성동구)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7
제 43 호 (서대문구)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8
제 44 호 (강동구)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19

◎ 사 명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감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25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의 무직 공무원 조정수당지급 구분

구 분	3 급 (2 급)	4 급 (3 급)
월수당 지급액	408,000	408,000

부 칙 (81. 7. 23)

이 조례는 198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법규정비 심의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1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 서울특별시훈령 제 549 호

서울특별시 법규정비 심의회 규정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정비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규칙, 훈령 (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 개폐에 따른 기존 안전
2. 업무 수행상 불합리하고 상충 모순된 상위법령의 정비 건의 안전

3. 기타 시장이 범규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로국장과 심의안전 제안국장이 된다.

제 4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간사 및 서기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서기는 법제계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에의 제안등 필요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소관국 주관과장을 실무 간사로 한다.

제 6 조 (회의) ① 심의회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 7 조 (심의절차) ① 제 2 조에 의한 안전을 제안하고자 하는 국(관)은 법무담당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별첨 서식에 의한 심의안전 10 부를 유인하여 간

시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 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하는 경우 또는 증건의 방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의회에 제출된 안전의 설명은 당해 주관국의 실무간사가 행한다.

③ 심의회에서 재검토 또는 보완 조치된 안전은 전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하고 부결된 안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이상 심의할 수 없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전은 소관주관과장이 간사의 협의를 거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된 안전 및 서면 심의 안전은 주관과에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 의뢰한다.

제 8 조 (회의록)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 간사, 제안국장, 부위원장,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정비심의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안건번호	제 호
심 의 년월일	(1981. . . .) (제 회)

심 의 사 항

(안)

제출부서	국(실) 과(실)
제출년월일	1981. . .

1. 계 안 이 유

- 가.
- 나.
- 다.

2. 주 요 관 자

- 가.
- 나.
- 다.

3. 계정, 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

5. 참 고 사 항 (별첨)

- 가. 관계 법령
- 나. 예 산
- 다. 합 의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제 412 호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에 관한 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에 대한 등급을 책정
하여 인원장비의 배치와 예산배정등
업무지원을 표준화함으로써 합리적
이고 균형있는 경찰 행정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파출소의 등급) 서울특별시 경찰
국 산하 파출소 (이하 "파출소"라
한다)는 이를 가, 나, 다의 3 등급
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제3 조 (등급조정기준) 파출소의 등급
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기준을 종
합적으로 평가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조정한다

1. 인접한 기간내의 범죄발생 검거
현황 (형정법 포함)
2. 각종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포
함) 발생 현황
3. 중요시설 기타 치안상 취약성 및
특수여건
4. 면적, 인구, 유동인구
5. 기타 업무수행 실적

제4 조 (조정시기) ①파출소의 등급조
정은 매 3 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출
소의 신설및 폐지 기타 등급을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수시 조정할수 있다.

제5 조 (조정권자) 파출소의 등급조정은
경찰서장이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참작 경찰국장이 조정한다.

제6 조 (등급조정절차) 파출소의 등급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경찰서장은 제3 조의 정하는 기준
에 따른 실적 통계를 최근 3년간
의 평균치로 별지 1의 양식에 의거
산출하여 파출소 등급 조정 자료 총
합표 (이하 "종합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의한 종합표가 작성되면
항목별 파출소 순위를 실적통계의
다파에 따라 선후로 정하고 이를 총
합하여 전 파출소 종합순위를 결정
선순위순으로 최종 종합표를 작성 경
찰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항목별 순위가 일정치 않아 종합순위
결정이 곤란한때는 별지 1의 양식의
항목 순위의 다파에 따라 결정한다.

③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찰국
장은 경찰서별 합계를 별지 1의 양식
에 의거 수합 서별 순위를 결정하고
전경찰서를 5개유형으로 분류 별표
2 (경찰서 유형별 파출소 등급 분포
비율표)에 의거 경찰서별 등급별
파출소의 수를 결정한다.

④ 제 2 항에 의하여 결정된 경찰서 별 등급순위에 따라 제 3 항에 의한 등급별 숫자대로 파출소의 등급을 확정한다.

제 7 조 (등급조정 의 제한) ① 등급조정에 있어 특수한 여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조정되는 파출소를 제외하고는 2 개 등급을 동시에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② 기존 파출소의 관내에 신설 또는 폐지되는 파출소가 있을 때는 그 등급을 반드시 조정하되 다음 각 호에 저후되어서는 아니된다.

1. 기존 파출소 관내에 신설되는 파출소에 대하여는 기존 파출소 기존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파출소의 등급이 "다" 급일 경우 또는 기존 파출소의 등급을 "다" 급으로 하향 조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2. 제 1 호의 경우 기존 파출소의 등급은 상향 조정할 수 없다.

3. 기존 파출소가 폐지되어 인접 파출소에 흡수될 경우 흡수하는 파출소는 그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없다.

③ 파출소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할 때는 경찰서장이 이에 상당한 소명자료를 경찰국장에게 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등급결정) 경찰국장은 제 2

조 내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출소의 등급을 결정하되 전반적인 치안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정원기준등) 파출소의 최저정원과 파출소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 10 조 (장비 및 업무지원기준) 파출소의 장비 및 업무지원은 이 규정을 활용하되 당시의 치안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 (등급별 기준의 활용)

① 경찰국 및 경찰서에서는 정원 기타 파출소별로 구분하여 책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2 조의 등급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국 및 경찰서에서는 경찰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및 예산등의 지원조치와 기타 제지시의 경우 이규정에 정한 등급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 2 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파출소는 이 규정에 의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현재 수준으로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 등급표

구분	계	가	나	다
	546	184	235	127
		6	8	3
중부	17	영희, 명동, 을지로 2가, 퇴계로 2가, 종무로 2가, 주자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을지로 6가, 청계천 6가, 장충공원, 종무로 4가, 퇴계로 6가, 장충	종무로 5가, 필동, 목정
		11	7	3
중로	21	종로 1가, 종로 2가, 관수, 전훈, 종로 3가, 신분로, 대묘, 외릉, 광희문, 통의, 재동	새종로, 옥인, 사직, 내자, 청진, 궁정, 효자	송현, 소격, 가회
		7	5	3
남대문	15	역전, 남대문, 남대문로 5가, 을지, 남대문로 3가, 태평, 소공	북창, 회현, 동자, 남묘, 남산	후암동부, 후암서부, 후암북부
		9	13	5
서대문	27	신촌, 서소문, 대현, 영현, 서대문, 문화촌, 법원, 안산, 홍제	교남, 의주로, 독립문, 대신, 연희, 교동, 천연, 북아현, 중림, 홍연, 연중, 만리, 현저	평창, 옥성, 구기, 새검, 연희 1
		9	7	3
동대문	19	종로 6가, 종로 5가, 종로 4가, 창청, 원남, 명륜, 혜화, 효제, 덕산	송일, 신설, 동묘, 동승, 이와, 창신, 용두	용남, 청계천 8가, 창덕궁
		11	8	6
용산	25	역전, 북한강, 삼각지	갈월, 용산, 효문,	서빙교, 용단, 용암,

급원 서별	계	가	나	다
용 산	25	남영, 시장, 한남, 이 태원, 북한남, 한강, 원효로 2 가, 원효로 1 가,	동부이촌, 용이, 청파 보광, 효창	원효로 4 가, 도원, 서계
성 북	24	8 길음, 돈암, 동원, 북 선, 청수, 삼선, 정릉 안동	12 보문, 경동, 고사, 북 악, 인영, 성북, 서선 성암, 안서, 양광, 돈 이, 대일	4 송덕, 신용두, 계기, 인수,
청 량 리	27	8 역전, 계기, 청량리, 남용두, 휘경, 화기, 이문, 홍릉	14 용일, 신계기, 답십리 전능, 경춘, 기곡, 장 안, 수문, 남장안, 동 답, 신답, 신이문, 신 장안, 전곡	5 배봉, 동이문, 이경, 남담, 북이문
마 포	29	10 서현, 마포, 도화, 서 산, 양덕, 공덕, 망원 대흥, 동현, 서교	12 연남, 동교, 성산, 신 덕, 상수, 성일, 염리 신흥, 합정, 아현, 상 암, 삼덕	7 금선, 신수, 서강, 양 화진, 노고산, 염산, 연봉
영 동 포	14	7 중암, 영이, 영산, 덕 전, 여외도, 당산, 문래	4 양평, 양이, 당중, 문이	3 윤중, 남강, 도림
성 동	30	10 홍인, 영미, 무학, 상 왕, 용곡, 을원, 홍익 금남, 마장, 금호	12 약수, 현인, 충현, 행 웅, 하왕, 금수, 옥수 행당, 사근, 청구, 문 화, 서마	8 당현, 등마, 금북, 신 당, 유락, 응봉, 금육 대원

구분 서별	계	가	나	다
		8	12	6
노 량 진	26	노량진, 대길, 남한강, 신양, 장섬, 대방, 명수 대, 신길	경금, 노이, 신광, 백운 동작, 상도, 상도3, 신 길 5, 옥석 2, 상도 4, 신길 4, 한수	북대방, 옥석 3, 신풍, 신영, 충신, 상종
		7	10	5
동 부	22	화양, 성수 2, 성산, 성 수 1, 경마장, 송정, 신 노유산	대공원, 능동, 구외, 자 양 1, 노유산, 용담, 중 곡 1, 자양 2, 광장, 신자양	중곡 2, 중곡 3, 중곡 4 남구외, 동구외
		10	10	8
서 부	28	가좌, 남가좌, 용암, 용 남, 용북, 구파발, 은평 수색, 불광, 갈현	대조, 동동, 종산, 홍은 진관, 북암, 연신, 구산 홍암, 북가좌	역촌, 역마, 대광, 연서 신사, 상신, 홍서, 신가
		7	11	7
북 부	25	노해, 삼양, 동화, 광산 신우이, 수유, 신창	월제, 우이, 도봉 2, 미 야 3, 도봉산, 수유 1, 도봉, 월제 2, 번동, 방 학, 수락	번 3, 수유 3, 방학 2, 쌍문 1, 상계 1, 쌍문, 번리
		7	12	6
남 부	25	시흥, 가리봉 3, 시흥 2 독산, 송곡, 가리봉 1, 구로 3	독산 2, 난곡, 신림 8, 신대방, 난우, 공단, 문 성, 신림 7, 독산 3, 대 신, 가리봉 2, 두산	독산남, 시흥 3, 3공단 신림 4, 시흥 4, 백산
		8	12	8
대 동	28	봉황, 중화, 면 3, 면북 용마, 공 1, 면 5, 망우	면 1, 북동, 공 2, 중 2 공룡, 망 1, 상계, 상봉 불암, 중계, 망 3, 북 1,	면 4, 상계 3, 상계 2, 면 6, 신내, 하계, 신상 계, 상계 4

구별 서명	계	가	나	다
강 남	24	9	10	5
		논현, 역삼, 신사, 신반포, 서초, 잠원, 양재, 서초2, 청담	반포, 압구정, 삼성, 은마, 대치, 내곡, 대왕, 삼성, 남3로, 개포	한양, 선릉, 상명, 잠수, 반포 2
관 악	27	6	16	5
		남성, 봉천, 사당, 신림, 관악, 당곡	청용, 방배, 봉천 6, 사당 5, 방배 2, 은천 봉천 10, 봉남, 사당 3 합산, 봉천 9, 교관, 봉천 7, 남현, 능내, 사당 4	봉동, 봉천 5, 신림 1, 신북, 신림 9
강 서	25	8	10	7
		공항, 양동, 신곡, 신정 1, 은향, 반곡, 화곡, 등촌	독동, 신정, 신월, 반산, 신월 2, 방화, 능안, 직할, 신월 3, 목3	화곡 4, 화곡 3, 가양양서, 화곡 1, 화곡 5 개화
강 동	27	7	12	8
		천호 2, 성내 2, 천호 3, 길동, 마천 2, 거여, 잠 1	암사, 방이, 둔촌, 풍남, 하일, 천호 1, 마천 1, 송파, 잠 2, 암사 3, 잠 4, 성내 1	잠 3, 명일, 잠 5, 신천, 암사 2, 송파 1, 상일, 가락
종 암	25	6	11	8
		율곡, 동월, 상월, 길 3, 송인, 석 1	종암, 서양, 석관, 장재, 장위, 미양, 장위 3, 장수, 남중, 동양, 대양	미릉, 월곡, 창문, 미아 4, 북양, 월광, 송래, 미아 2
구 로	16	5	7	4
		남구, 신도림, 대림 2, 구로, 동구	오봉, 대림, 구로 5, 고척, 오류, 개봉, 오류 2	새곡, 고척 2, 개명, 운수

< 별표 2 >

경찰서 유형별 파출소 등급 분포 비율표

유형별 파출소 등급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유 형 별 경찰서 분포 비율	15 %	20 %	30 %	20 %	15 %
가 급	40 %	37 %	34 %	31 %	28 %
나 급	47 %	45 %	43 %	41 %	39 %
다 급	13 %	18 %	23 %	28 %	33 %

< 별표 3 >

파출소의 등급별 정원 과 파출소장의 직급 기준

제 급 별 등급별	제	경 위	경 위 또 는 경 사	경 사	경 장	순 경	비 고
가 급	11	1			2	8	
나 급	9		1		2	6	
다 급	9			1	1	7	

〈붙임지 1〉 파출소등급조정자료종합표																
시 별	파 출 소 명	수 사		총 발 보	안			경 비			정보1		정보2		총 합	
		① 범죄 발생 (건)	② 범죄 검거 (명)		③ 유동 인구 (만명)	④ 주심 (명)	⑤ 후방 (명)	⑥ 안전 사고 (건)	⑦ 교통 사고 (건)	⑧ 중요 시설 수	⑨ 다중범죄 생 (회)	⑩ 학 교 수 (건수)	⑪ 정보 수집 (건수)	⑫ 시찰대 상자수 (명)	⑬ 상주 인구 (명)	⑭ 면적 (㎡)
		①형사범죄발생건수 ②형사범죄검거인원 ③내왕자추경수 (거주자 및 차량승차통행인 제외) 예: 직장인내왕, 역터미날, 시장, 백화점이용객 ④파출소에서 통고처분자 및 행정법규위반자 적발보고서 작성 분석 보고분 ⑤행정법규위반자중 파출소에서 후방자 ⑥산악, 익사, 폭발물, 붕괴, 연탄가스, 감전, 추락등의 안전사고 ⑦교통사고 발생건수 ⑧중요시설(가, 나, 다급책정분)수 ⑨다중범죄·스요사태발생회수 ⑩대학교, 대학, 신학대학(대학교의 경우 동일구내에 위치한 수개의 단과대학은 1개로복 ⑪치안, 대동, 의사동 각종 첩보집수의 합계 ⑫요시찰인, 관보자, 사회안전법대상자등 대공상시찰대상자(년도말일기준) ⑬최근에 실시한 공식적인 서울시전체의 상주인구조사통계 ⑭파출소별 관할면적 ⑮기타등급에 영향을 주는 치안상 특수여건 ※ 다만 이양식을 경찰국에서 사용시는 파출소명린을 "파출소수"로 한다.														

제 849 호 시 보 1981. 7. 25 20-13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98 호 (77.11.8) 로 사업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변경허가 (기간연장)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마. 사업기간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7.21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개봉동산 22-1

나.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개봉중학교 부지조성공사

다. 면적 : 12,992 ㎡ (3,930 평)

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마포구 성산동 231-4 기독교 한국오순절 하나님의교회 대표 한영철

당 초		변 경	
착 공	준공예정일	착 공	준공예정일
77.11.8	81.6.30	77.11.8	81.12.31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7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 계획 변경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0 호 (79.4.10) 로 도시계획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일부를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기획조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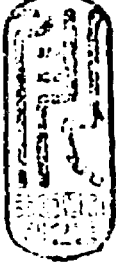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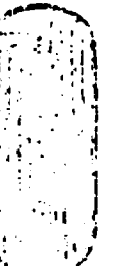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년 경 내 용			
구 분	당 초		년 경
시행기간	1. 착공년월일 : 인가일 2. 준공년월일 : 1981.12.30		1. 착공년월일 : 인가일 2. 준공년월일 : 1983.12.31.
사업규모	1. 폭 : 10 미터 - 30 미터 2. 연장 : 20.88km (1.29km 인입 선포함)		1. 폭 : 10 미터 - 30 미터 2. 연장 : 20.88km (1.29km 인입 선포함) 3. 지상변전소 : 1개소 (성수변전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공 고</div>		서울특별시 일부 동철사위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 1981. 7. 서울특별시 장 학 영 수	
○ 서울특별시공고제 194 호 동철사위치변경공고 ○ 위치변경내용			
동사무소명	변 경 내 용		이전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원효로1 동사무소	용산구원효로2가44-2	용산구원효로1가26-4	81.7.28
본동사무소	동작구본동126-19	동작구본동126-13	81.7.20
신림11 동사무소	관악구신림동607-73	관악구신림동1565-6	81.7.25
○ 서울특별시공고제 195 호 건설업법 (조정식재및시설물단종공사업) 면허취소처분에대한취소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13(81.4.16) 호로 건설업 (조정식재 및 시설물 단종 공사업) 면허를 취소한 업체중 다 음일체의 건설업면허는 국무총리 소		월제결서 (사건번호 81-18, 81- 16, 81-21) 에 의거 면허를 취 소한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 한다. 1981. 7.16.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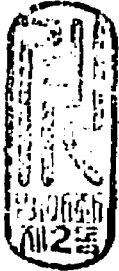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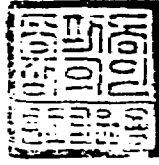

업 체 명 단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면 허 번 호		제 결 일 자
			조정식재	조정시설물	
삼 미 사	조영숙	중구신당동 217-91	21-22	22-14	81.7. 4
영산조정(주)	이한섭	• 봉래동 1가 132-6	21-40		81.6.29
신일농원	주일수	• 봉래동 65-10	21-33	22-24	81.7. 4

<p>◎ 서울특별시공고제 198 호</p> <p>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작사용승인하고 판인규정제 9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p> <p>1981. 7.22</p> <p>서울특별시 장</p>		<p>1. 공인명 : 강서구청장위 인</p> <p>2. 사용개시일 : 1981. 8. 1</p> <p>3. 공인의인명 :</p>
인	영	
공인명	강서구청장의 직인및제인	

<p>◎ 서울특별시공고제 199 호</p> <p>열사용기자제형식승인취소</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6 조제 1 호 규정에 의거 열사용기자제형식승인을</p> <p>다 음</p>		<p>다음과 같이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1. 7</p> <p>서울특별시 장</p>		
업체명, 대표, 소재지	기자제명	형식승인번호	취소내용	취소사유
연합산업사 고 동 수 구로구 개봉동 416-13	구멍판용 연 소 기	9-1002-2	고정식 2 호	제조업 허가취소

<p>○ 성동구공고제 405 호</p> <p>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인울 개각 사용승인하였기 동조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1. 성 동 구 청 장</p> <p>1. 공인명칭 : 아 래 2. 사용개시일 : 81. 6. 1. 09:00 3. 공인인영 :</p>		인영	 
		공인명	성수 2 가 1 동상의 직인및제인
인영	 	인영	 
		공인명	하왕실리계 2 동장의 직인및제인
인영	 	인영	 
		공인명	자양제 1 동장의 직인및제인
인영	 	인영	 
		공인명	구의동장의 직인및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성수 1가동장의 직인및제인		공인명	홍제 3 동장의 직인및제인
<p>○ 서대문구공고제 43 호</p> <p>공인개작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장직인 및 제인을 개작하였기 동조례 제 9 조 에 의거 공고함.</p> <p>1981. 7 서대문구청장</p> <p>다 음</p> <p>1. 사용일시 : 1981. 8. 1. 09:00 2. 공인개작인영 :</p>				
인 영	 	인 영	 	
공인명	인제동장의 직인및제인		공인명	남가좌 1 동장의 직인및제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남가좌계 2 동장의 직인 및 제인	공인명	송파동장의 직인 및 제인 (분소 민원용)
<p>○ 강동구 공고제 44 호</p> <p>공인개각사용 승인 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파동장 공인을 사용승인 하였기 서울특별시공인 조례제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p> <p>1981. 7.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다 은 -</p> <p>1. 공인 개각사용 개시 일자 1981. 7. 22.</p> <p>2. 개각된 공인명 송파동장의 직인 및 제인 (분소민원용)</p> <p>3. 공인 개각인명</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1. 7. 13 명 264 호</p> <p>중구시 민국장 김 태 수 서 기 관</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영등포구시 민국장 하 영 기 서 기 관</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통 령</p> <p>○ 1981. 7. 17 명 263 호</p> <p>강동구장실 5동 최 영 준 지 방 행 정 주 사</p> <p>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1981. 7. 15 명 265 호</p> <p>성동구전실국토부과 토 목 기 과</p> <p>원예 의학의 그 적을 면함.</p> <p>대 통 명</p>	<p>1981. . . 23 명 266 호</p> <p>공무원교육원 이 강 순 행정서기</p> <p>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그 직위를 해제함(81. 7.23-81.10.23까지 내무국 대기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	--